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 명확화〉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88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 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 명확화<br>(안 제7조제6항)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26.

다. 회 부 일 : 2026. 2.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관한 조사·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 Ⅲ. 검토의견

#### 1.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 명확화 (안 제7조제6항)

| 현 행                                                                                                          | 개 정 안                                                                                                        |
|--------------------------------------------------------------------------------------------------------------|--------------------------------------------------------------------------------------------------------------|
|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u>지급</u> 할 수 있음 |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u>출연</u> 할 수 있음 |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유재산특례의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타당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sup>.

또한, 동법 시행령은 해당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음<sup>2)</sup>.

1)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존속기한이 만료된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존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시 기획재정부는 관련하여 2025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6,500만원을 집행함.

###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회계/기금 | 예산액 / 집행액 |      |
|--------|------------|-------|-----------|------|
|        |            |       | 2025      | 2026 |
| 국유재산관리 |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 일반회계  | 65 / 65   | 65 / |

자료: 재정경제부

### [2025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실시 결과]

| 연번 | 소관 부처   | 근거법률                                  | 최종결과   | 비고     |
|----|---------|---------------------------------------|--------|--------|
| 1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 존치     |        |
| 2  |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조건부 존치 | 미운용 특례 |
| 3  |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 존치     |        |
| 4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 존치     |        |
| 5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 조건부 존치 | 미운용 특례 |
| 6  | 법무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 존치     |        |
| 7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 존치     |        |
| 8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 존치     |        |
| 9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             | 존치     |        |
| 10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 조건부 존치 | 미운용 특례 |
| 11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     | 조건부 존치 | 미운용 특례 |
| 12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 존치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그 밖에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         |                                          |        |        |
|----|---------|------------------------------------------|--------|--------|
| 13 | 교육부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 존치     |        |
| 14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 존치     |        |
| 15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 조건부 존치 | 미운용 특례 |

자료: 재정경제부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3)</sup>. 이에 개정안은 현행 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경비 지급이 출연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출연금 지급의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재정경제부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 재산특례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3)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 ⑤ (생략)                                                                      |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u>지급</u> 할 수 있다. | ⑥ -----<br>-----<br>-----<br>-----출연할-----. |
| ⑦ (생략)                                                                                                | ⑦ (현행과 같음)                                  |

|              |
|--------------|
| 문의처          |
| 02)6788-5160 |